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2,411,060	20,472,332
일반회계	569,736,911	17,092,107
특별회계	112,674,149	3,380,224
기타특별회계	112,674,149	3,380,2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213,651	456,410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41,854	25,256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434,159	13,02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6,637	4,099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187,266	215,61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40,937	19,22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57	6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8,109,962	543,299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69,365,478	2,080,964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42,048	22,26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